

# 「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1. 13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### 2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」 일부개정 시(2024. 6. 28.) 정비된 조항(제3조제2항)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, 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에 위임조항 규정(안 제1조)
- 여비의 지급 구분 명시(안 제2조)
-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의 내용 정비(안 제3조)
- 준용 조항 현행화(안 제4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의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시함.
- 안 제2조(여비의 지급 구분)에서 기존 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」와 중복·상이한 규정을 정비함.
- 안 제3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)에서 여비 부당수령 시

가산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에서 준용 대상 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 간 중복·불일치를 해소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지방공무원법**

**제46조(실비보상 등)**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,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**

**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